

심 사 보 고 서

【남양주시가족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24

2026. 10. 8.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연월일 및 제출자: 2026. 8. 31. / 남양주시장

나. 회부일자: 2026. 10. 7.

다. 상정 및 의결일자: 2026. 10. 8.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남양주시가족센터 위탁 운영 기간이 2026.12.31.자로 만료됨에 따라,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공개모집에 의한 재위탁을 추진함.

3.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 내용 : 남양주시가족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 건강가정지원사업,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아이돌봄지원사업, 그밖에 시장 등이 건강가정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나. 위탁시설 개요

- 現 수탁기관 :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단장 : 함도훈)
- 現 위탁기간 : 2022. 1. 1. ~ 2026. 12. 31. (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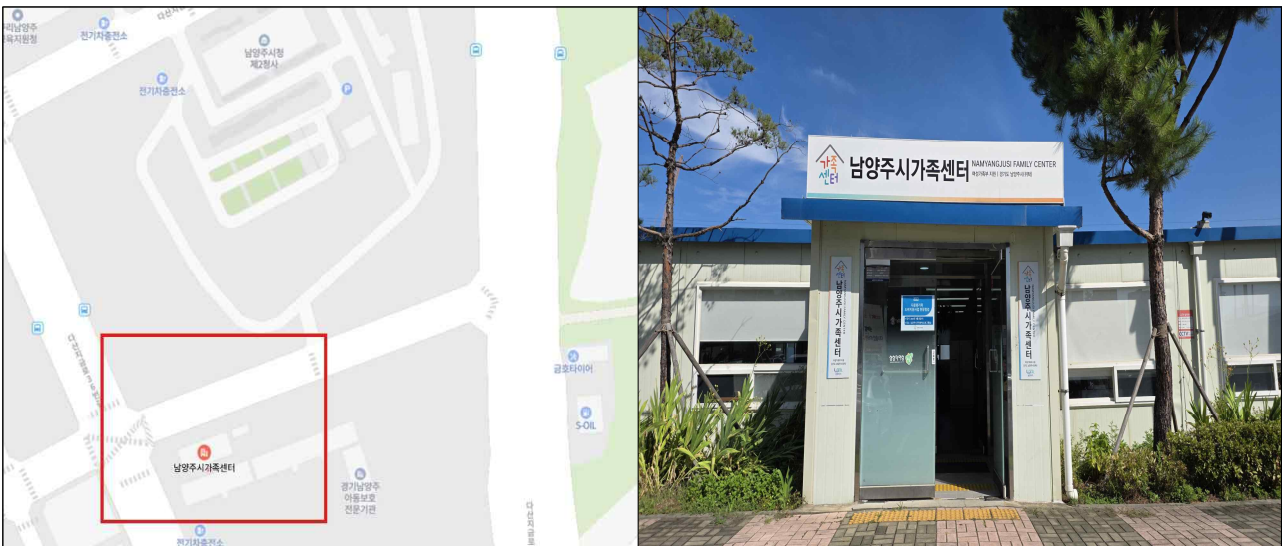
○ 시설현황

시설명	위 치	규 모	종사자	비고
남양주시가족센터	다산지금로16번길 95(다산동)	267㎡	29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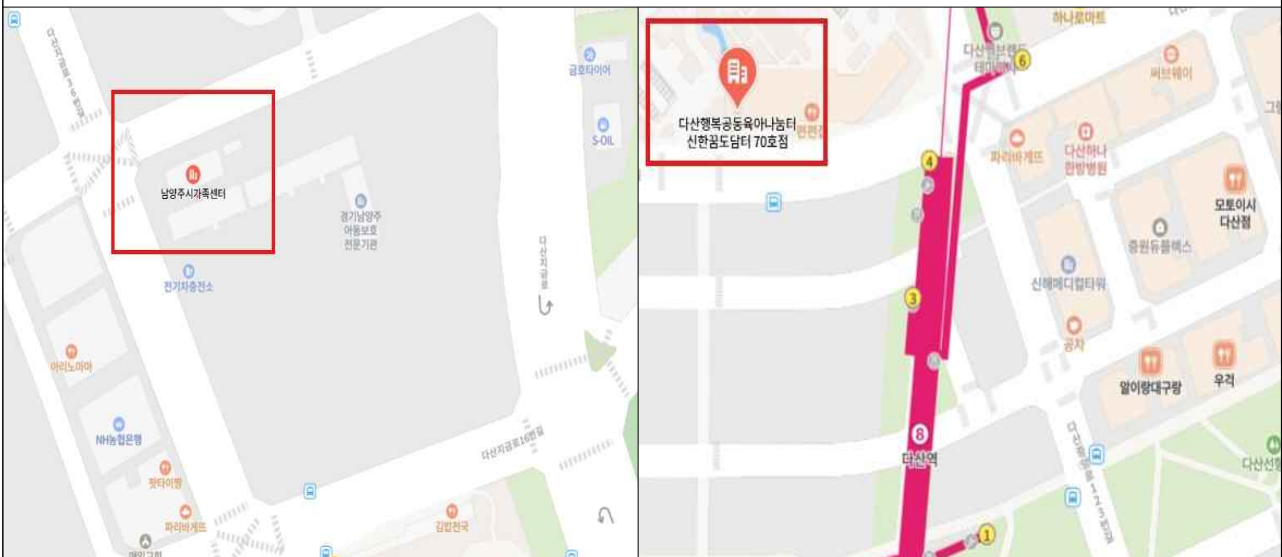
※ 부속시설 : 한국어 교실(다산동), 공동육아나눔터(다산동)

※ 기타 종사인력 : 아이돌봄사 350명, 방문지도사 11명, 보듬매니저 2명, 시간제 3명

- 위치도



(본관) 남양주시가족센터
다산지금로16번길 95 (청6부지)



(부속시설) 한국어 교실
경춘로 522 남양주시청 제2청사(별관 2층)

(부속시설) 공동육아나눔터
다산중앙로145번길 38(다산동)
(다산역경기행복주택 상가 1층)

다. 민간위탁 기간

- 2027. 1. 1. ~ 2031. 12. 31. (5년)

라. 수탁기관 선정방식

- 공개모집(재위탁) : 남양주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한 수탁기관 선정

마.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 연간 위탁사업비 : 총 11,468,738천원
- 가족사업(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 : 1,780,801천원
 - ※ 국비 724,215천원, 도비 154,236천원, 시비 902,350천원
- 아이돌봄사업 : 9,687,937천원
 - ※ 국비 6,650,000천원, 도비 1,481,381천원, 시비 1,556,556천원

바.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검토사항	검토내용				
다른 사무 방식으로의 수행가능성	단계	특성	판 단 내 용	분 류	결 정
	①	소관사무	시장의 사무인지?	해당	②번 검토
				비해당	보조사업
	②	공공성 공익성	행정서비스가 공공재에 해당하는지?	해당	③번 검토
				비해당	사용수익허가
	③	非권리, 의무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았는지?	해당	④번 검토
				비해당	직영
	④	전문적, 지속적 사무	민간의 전문성이 요구되며, 지속적 사무인지?	해당	⑤번 검토
				비해당	용역
	⑤	전체적 사무	서비스 공급과정의 전체적 사무인지?	해당	⑥번 검토
				비해당	용역
	⑥	경쟁 가능성	수탁기관 선정 시 경쟁원리의 적용이 가능한지?	해당	⑦번 검토
비해당				공공위탁	
⑦	책임성	권한 행사의 법률적 효과가 수탁기관에 귀속되는지?	해당	민간위탁	
			비해당	대행	
○ 종합의견 :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민간위탁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민간위탁으로 추진함이 타당함.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서비스의 수혜대상	· 서비스 수혜대상 시민의 범위가 편중되지 않았는지?		■ 예	□ 아니오
	서비스의 공급 지속성	· 장기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서비스의 공급이 필요한지?		■ 예	□ 아니오
경제적 효율성	· 민간기관의 기존 전문인력과 운영자원을 활용할 수 있어 행정·재정적 효율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				
민간의 전문성 기술성	· 가족상담, 가족교육, 다문화가족 지원 등 관련 분야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활용할 수 있어 민간위탁이 적정함.				
성과측정의 용이성	· 이용자 수, 프로그램 운영실적, 만족도 및 사례관리 성과 등 객관적·정성적 지표를 통해 성과측정이 가능함.				
관리·운영의 투명성	· 위탁협약, 정기 지도·점검, 회계검사 및 성과평가를 통해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음.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 관련 법인·단체 등 민간 서비스 공급 기반이 형성되어 있어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기관 선정이 가능함.				
총괄의견	○ 가족센터는 상담·교육·사례관리 및 다문화가족 지원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민간기관의 전문인력과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민간위탁 운영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수탁기관 선정 시 전문성·재정능력·사업수행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위탁 후 정기적인 지도·점검 및 성과평가를 통해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사. 기타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 향후계획

- 2026. 9. ~ 10. : 위탁기관 모집 공고 및 접수
- 2026. 12.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 및 수탁기관 선정

4.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조공선)

- 본 안건은 위탁기간 만료가 예정된 남양주시가족센터의 운영사무를 공개모집을 통해 민간에 재위탁하고자,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임.
- 동 센터는 2008년도부터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각각 운영해 왔으나 2018년부터 가족센터로 통합운영된 사항임. 가족센터는 그 기능과 지원 업무 등이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민간기관의 전문인력과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민간위탁 운영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수탁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는 업무 추진 시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5. 질의·답변요지 : 회의록 참고

6. 토론요지 : 없 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심 사 보 고 서

【남양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5

2026. 10. 8.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연월일 및 제출자: 2026. 8. 31. / 남양주시장
- 나. 회부일자: 2026. 10. 7.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2026. 10. 8.

2. 제안이유

- 조례전부개정(2023.09.26.) 이후 「아동복지법」 및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원칙에 따라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 (제17조)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아동참여위원회 위원장을 추가 위촉
 - (제22조)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정기회의 확대
- 나. 아동참여위원회
 - (제27조) 아동위원의 연령기준에 의한 해촉 명시
 - (제29조) 아동참여위원회의 임시회 개최 기준 정비
- 다. 아동친화도시 내부정책 추진단 관련 장 신설(제6장)
 - (제35조~제38조) 추진단 설치, 기능, 구성, 회의 관련 4개 조 신설

4.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조공선)

- 본 안건은 「아동복지법」 및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원칙에 따라 아동의 참여권을 확대하고 아동친화도시 관련 정책의 추진체계를 보완하려는 것으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에 아동참여위원회 위원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하고, 추진위원회 정기회의를 연 1회에서 연 2회로 확대하며, 아동위원의 연령 도달에 따른 임기 기준과 아동참여위원회 임시회 소집요건을 정비하는 한편, 아동친화도시 내부정책 추진단의 설치·기능·구성·회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임
- 주요 내용중 아동친화도시 내부정책 추진단 신설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의미를 시민들과 공유하고, 아동의 권리가 일상에서 실현되는 도시를 조성하려는 후속차원에서 조례와 전담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보임
- 본 개정안 검토결과 아동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고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조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5. 질의·답변요지 : 회의록 참고

6. 토론요지 : 없 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심 사 보 고 서

【시립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26

2026. 10. 8.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결과

가. 제출연월일 및 제출자: 2026. 8. 31. / 남양주시장

나. 회부일자: 2026. 10. 7.

다. 상정 및 의결일자: 2026. 10. 8.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시립어린이집 운영을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으로 공보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 내용 : 시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

나. 위탁시설 개요

- 재계약 7개소

연번	어린이집명	위탁체	소재지	규모 (㎡)	정원 (명)	위탁기간
1	도촌	권O영	비룡로 1276	175	38	2027. 1. 1. ~ 2031. 12. 31.
2	오남복지	홍O경	오남읍 진건오남로 806-28	244.8	46	2027. 1. 1. ~ 2031. 12. 31.
3	토리	유O숙	별내4로7	185.22	38	2027. 1. 1. ~ 2031. 12. 31.
4	더샵	황O주	진접읍 부평로48번길 140,	299.2	60	2027. 1. 3. ~ 2032. 1. 2.
5	다산 푸르지오	김O정	다산중앙로82번안길 74	392.7	80	2027. 1. 10. ~ 2032. 1. 9.
6	푸른들보듬이 나눔이	김O정	오남읍 진건오남로 550번길 41	593.39	80	2027. 1. 18. ~ 2032. 1. 17.
7	별꽃	안O정	순화궁로 18	286.56	53	2027. 1. 20. ~ 2032. 1. 19.

○ 신규위탁 1개소

연번	어린이집명	신규위탁 사유	소재지	규모 (㎡)	정원 (명)	위탁기간	비고
1	(가칭) 다산지금 A-3BL 어린이집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국공립어린이집 의무 설치	다산동 6111	247.71	49 (예정)	개원일로부터 5년 (2027.7. 개원 예상)	26. 3차(예정) 수탁자심의 위원회

※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공동주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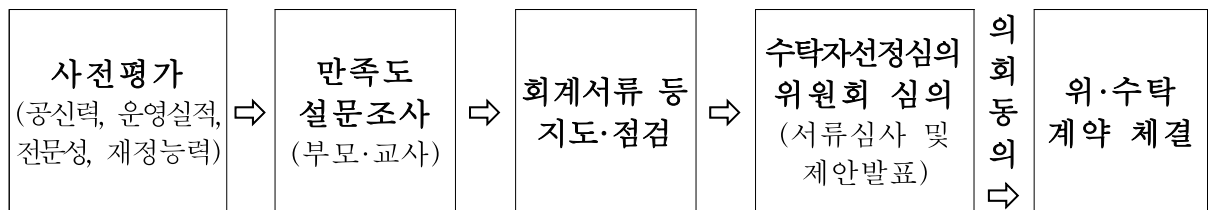
사업명	사업시행자	연면적 (㎡)	세대수	동수	사용검사 예정월	비고
다산지금 A-3BL 통합공공임대주택	경기도시 주택공사 (GH)	64,008.79	518	3	2027.4. 예정	

○ 재위탁 4개소

연번	어린이집명	현 위탁체	소재지	규모 (㎡)	정원 (명)	위탁기간	비고
1	푸른숲	강O회	송산로 307번길 22	237.06	55	2027. 1. 20. ~ 2032. 1. 19.	26. 3차(예정) 수탁자심의 위원회
2	한별	박O경	별내4로 7	381.89	79	2027. 1. 1. ~ 2031. 12. 31.	
3	퇴계원	최O춘	퇴계원면 경춘북로 558번길 10-2	313.195	73	2027. 1. 10. ~ 2032. 1. 9.	
4	별내 아이파크	이O설	덕송1로 30	253.87	59	2027. 1. 20. ~ 2032. 1.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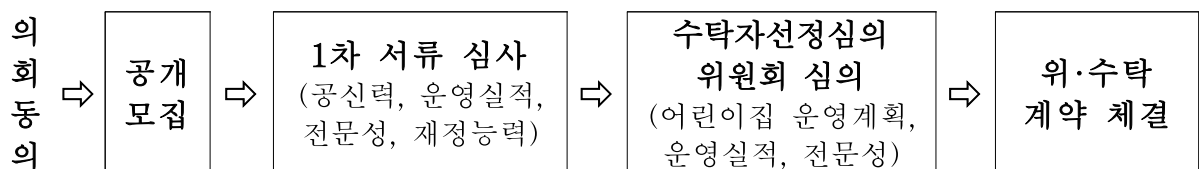
다. 수탁기관 선정방식

○ (재계약) 현 위탁체 운영실적 평가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



※ 최종결과 70점 이상인 경우 재계약, 70점 미만인 경우 공개경쟁 추진

○ (신규위탁/재위탁)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탁체 선정



※ 최종결과 70점 이상, 1·2차 평가 합산 점수가 높은 신청자를 위탁체로 결정

라.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 운영재원 : 정부지원 보조금 및 아동 보육료 등 자체수입

○ 소요예산 : 9,106,011천원(2026년도 시립어린이집 예산 기준)

(단위 : 명, 천원)

연번	어린이집명	정원	보육 교직원	소요예산 및 산출내역		
				계	인건비 (보육교직원)	운영비 (관리운영비, 보육활동비 등)
계				9,106,011	5,827,771	3,278,240
1	도촌	38	12	595,503	432,325	163,178
2	오남복지	46	13	799,768	509,607	290,161
3	토리	38	12	605,318	425,008	180,310
4	더샵	60	20	957,385	700,252	257,133
5	다산 푸르지오	80	19	1,033,613	683,999	349,614
6	푸른들보듬이 나눔이	80	19	1,163,175	647,653	515,522
7	별꽃	53	11	549,303	398,740	150,563
8	푸른숲	55	9	654,127	394,575	259,552
9	한별	79	15	942,505	516,129	426,376
10	퇴계원	73	16	1,004,460	641,571	362,889
11	별내 아이파크	59	12	800,854	477,912	322,942

마.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구 분	검 토 의 견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시립어린이집은 행정기관의 책임성과 보육사무의 도덕성, 법적 건전성, 전문성을 요하는 사무로 민간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과 구분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 보육사업의 운영 경험이 풍부한 수탁체를 선정하여 공보육 서비스의 안정화 도모
경제적 효율성	○ 운영 경험 및 전문적 지식이 있는 민간 운영체를 활용하여 경제적 비용 절감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어린이집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민간의 전문기술 및 인력 등을 적극 활용

구 분	검 토 의 견
성과 측정의 용이성	○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학부모 만족도 조사 및 회계점검 등을 통해 운영실적 평가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회계관리시스템 활용 및 운영비 정산보고, 지도점검 등을 통해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여건	○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기술과 운영지식을 갖춘 민간 운영체에 위탁하여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

바. 재계약 대상 성과평가 결과

연번	어린이집명	최종 결과	계* (100점)	1차 평가(40점)	2차 평가(60점)
				사전평가, 부모·교직원 만족도 조사, 회계점검	수탁자선정심의 위원회 심의
1	도촌	적격	89.8	39	50.8
2	오남복지	적격	87.6	39	48.6
3	토리	적격	77.8	36	41.8
4	더샵	적격	83.6	37	46.6
5	다산 푸르지오	적격	83.4	39	44.4
6	푸른들보듬이 나눔이	적격	93.6	39	54.6
7	별꽃	적격	83.4	37	46.4

*가산점(최대2점) 포함 점수

사. 향후계획

- 2026. 9. ~ 10. : (재위탁4개소) 위탁체 모집 공고 및 접수
- 2026. 10. : 2026년 제3차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 및 위탁체 선정
- 2026. 12. : (재위탁 4개소) 시립어린이집 위·수탁 계약체결
- 2026. 12. : (재계약 7개소) 시립어린이집 위·수탁 계약체결
- 2027. 상반기 : (신규위탁 1개소) 시립어린이집 위·수탁 계약체결

4.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조공선)

- 본 동의안은 시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자와의 재계약7개소 및 신규위탁1개소, 재위탁4개소를 추진함에 있어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사항임.
- 재계약 대상에 대한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및 성과평가 등 관련 절차는 적정하게 이행된 것으로 확인됨. 아울러, 시립어린이집 운영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민간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활용하여 행정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측면에서 타당성이 인정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5. 질의·답변요지 : 회의록 참고

6. 토론요지 : 없 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심 사 보 고 서

【남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

의안번호

27

2026. 10. 12.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연월일 및 제출자: 2026. 8. 31. / 남양주시장
- 나. 회부일자: 2026. 10. 7.
- 다. 상 정 일: 2026. 10. 8.
- 라. 의 결 일: 2026. 10. 12.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체육시설의 위탁운영)
- 「남양주시 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 조례」 제20조(위탁관리)

○ 민간위탁 필요성

- 현재 시설별 관리주체가 상이한 우리 시 파크골프장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남양주시체육회에 위탁하고자 함
(변경내용 : 위탁시설 4개소 → 11개소, 파크골프장 7개소 추가)

3.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 내용

- 국궁장(천마장) 및 테니스장(다산·별내·퇴계원) 운영·관리
- 파크골프장 운영·관리 (변경_추가)

나. 위탁시설 개요

○ (기존) 국궁장 1개소, 테니스장 3개소

시설명	주요시설	비고
국궁장(천마장)	4개 사로, 28개 사대	운영 중
별내배수지 테니스장	코트 2면	운영 중
용암천 테니스장	코트 2면	운영 예정('27.3.)
다산진건 테니스장	코트 2면	운영 예정('27.3)

○ (변경_추가) 파크골프장 7개소

연번	구분	조성 시기	관리주체		위탁 일정	비고
			기존	변경		
1	별내동 파크골프(9홀)	‘14.4	행정복지센터, 읍면동	체육회	‘27.1.	운영중
2	조안면 파크골프(9홀)	‘22.7				
3	수동면 파크골프(9홀)	‘25.11				
4	왕숙천 다목적광장(18홀)	‘21.12	도시공사		‘26.11.	
5	화도읍 파크골프(18홀)	‘26.5	체육회			
6	남양주 다목적광장(18홀)	‘27.5	-		‘27.5.	조성중
7	진접읍 파크골프(9홀)	‘27.7			‘27.7.	

다. 민간위탁 기간

○ 위탁일로부터 2028. 12. 31. 까지

※ 기존 시설 위탁 종료 기간 동일(2026. 1. 1. ~ 2028. 12. 31. / 3년)

라. 수탁기관 선정방식

- 현재 우리 시 공공체육시설 4개소(국궁장 1개소, 테니스장 3개소) 위탁운영·관리 중인 남양주시체육회에 파크골프장 7개소 추가 위탁(민간위탁 내용 변경)

○ 수탁기관: 남양주시체육회



○ 추진 근거

가. 관련 법령에 따른 지방체육회 민간위탁 수의계약 근거 확보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3, 남양주시 체육진흥 조례 제11조)

나. 공익성, 운영의 효율성 및 전문성, 지역사회 수용성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풍부한 경험 및 전문인력 풀을 보유한 남양주시 체육회와의 수의계약을 추진

○ 위탁운영 방식

- 위탁 시설(사무) 지도·감독: 市
- 시설 운영·관리: 체육회(수탁기관)
- 프로그램 운영 등(강습, 안전관리 등): 종목단체(테니스, 궁도협회, 파크골프협회)

시설 운영·관리 역할은 체육회에서 담당하고, 종목별 전문성과 현장 운영 역량을 갖춘 종목단체의 프로그램 운영 참여를 통해 운영 효율화 및 전문성 제고

마.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 소요예산: 1,350,837천원

○ 산출내역

구분		금액(천원)			비고
		합계	2026년	2027년	
공공 체육시설 민간위탁금	합계	1,350,837	25,000	1,325,837	
	인건비	822,239	9,772	812,467	
	운영비	528,598	15,228	513,370	

※ 2026년 : 화도파크골프장 관리·운영비 25,000천원

※ 2027년 : 파크골프장 7개소 관리·운영비 1,325,837천원

바.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근거

구 분	검 토 의 건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현재 운영·관리 주체가 남양주도시공사, 행정복지센터, 읍·면동으로 다원화 되어있는 사항으로, 민간위탁을 통한 일원화 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운영 예상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 시민에게 생활체육시설을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 독점 이용하려는 협회(클럽) 및 일반 이용자 마찰 발생에 대하여 파크골프협회가 소속된 체육회가 남양주도시공사 및 행정복지센터보다 갈등 중재·조정 유리
경제적 효율성	○ 관련 분야의 민간 네트워크 활용 및 확보가 용이하여 효율적인 시설 운영이 가능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관련 분야의 현장경험 및 축적된 전문자원 활용이 가능한 민간에 시설을 위탁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시설 유지관리가 용이
성과 측정의 용이성	○ 관련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은 공공체육시설 운영 취지에 부합하는 시설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설별 여건에 맞게 관리·운영을 수행하므로 성과측정이 용이함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위탁사업비 집행 현황, 시설 관리 실태 등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등을 실시하고, 위탁 기간 만료 전 성과평가 실시 및 결과 공개 등을 통해 운영의 투명성 확보 가능함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여건	○ 체육 수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고, 체육과 밀접한 민간에 시설을 위탁하는 것이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 유리
총 합 의 건	○ 세 시설(국궁장, 테니스장, 파크골프장) 모두 민간전문인력과 축적된 경험을 활용해 안정적·효율적 운영이 가능하며, 시민 만족도와 공공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위탁 추진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4. 검토보고요지(전문위원 조공선)

- 본 동의안은 남양주시체육회에 위탁 운영중인 기존 국궁장 1개소, 테니스장 3개소에 파크골프장 7개소를 추가 위탁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임.
- 관내 파크골프장 7개소를 남양주시체육회에 추가 위탁 시 파크골프 협회를 통해 전문성과 효율성을 갖춘 체계적인 운영이 가능한 점과, 협회 자원을 통해 시설 운영시 운영 효과가 크다는 점 등 시민 만족도가 제고될 것으로 보이며 민간 위탁 추진 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다만, 위탁시설이 11개소로 확대되는 만큼 향후 시설별 운영실태와 예산 집행 등에 대한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5. 질의·답변요지: 회의록 참고

6. 토론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8. 소수의견 요지: 없 음

심 사 보 고 서

【2027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안】

의안번호
28

2026. 10. 8.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연월일 및 제출자: 2026. 8. 31. / 남양주시장
- 나. 회부일자: 2026. 10. 7.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2026. 10. 8.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특별대책지역의 수질보전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발굴 및 협의를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의 운용예산을 매년 팔당 7개 시·군 분담금으로 지원함에 있어,
-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남양주시 의회의 사전의결을 얻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사 업 명 :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

나. 사업목적

-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불합리한 상수원 규제를 개선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연구 및 교육홍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다. 사업기간 : 2004년 ~ 지속추진 중

라. 출연금 개요

○ 지원내용 :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운용에 필요한 비용지원

○ 2027년 출연금 : 80백만원

※ 팔당 특별대책지역 7개 시·군별 각80백만원 출연

마. 출연대상 :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 일반현황

- 설립목적 :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갈등
중재·조정기구(' 03. 11. 출범)

- 구성현황 : 기후부, 경기도, 7개시·군(남양주, 가평, 광주, 양평, 여주, 용인, 이천)

※ 기후부 1차관, 한강유역청장, 물환경정책관, 경기도 경제부지사, 7개 시장·군수,
의회의장, 주민대표

바. 출연현황

(단위: 천원)

합계	'04~'19	'20	'21	'22	'23	'24	'25	'26
1,470,000	910,000	80,000	80,000	80,000	80,000	80,000	80,000	80,000

사. 주요 추진내용

○ 상수원 관리지역 규제 개선을 위한 공동 대응 추진

-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등 입지규제 개선을 위한 과제 발굴 및 협의

○ 팔당지역 지역발전을 위한 연구 및 교육홍보 사업 추진

- 수변구역 규제변화에 따른 팔당 상수원 수질영향 분석, 팔당수계 특화
발전방안 수립 연구, 팔당호 상수원보호구역 어로행위 허용에 따른 수질·
생태영향 및 보상방안 연구, 정기간행물 제작 등

아. 기대효과

○ 기후부와 지자체, 지역주민 간의 갈등 중재와 상호 협력을 도모함으로써
팔당 상수원 지역의 수질보전과 합리적인 규제 개선 실현

4.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조공선)

- 본 출연안은 특별대책지역의 수질보전과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협의 및 연구 등을 수행하는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의 2027년도 운영비 중 남양주시 분담금 8천만 원을 출연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사항임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제2항에서는 특별대책지역과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의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별대책 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 운영규정」 제16조에서도 협의회 운용예산을 한강수계관리위원회와 참여기관에서 출연하도록 정하고 있어 출연에 대한 법적·절차적 근거는 갖추어진 것으로 판단됨
- 협의회는 팔당 특별대책지역 7개 시·군과 기후에너지환경부, 경기도 및 지역주민 등이 함께 참여하여 수질보전과 지역발전의 조화 방안을 협의하는 기구로, 상수원 규제 개선을 위한 공동 대응과 관련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특히 2027년에는 수변구역 규제변화에 따른 수질 영향 분석, 팔당수계 특화발전방안 연구 등 수질보전과 지역의 합리적인 규제 개선에 관한 사업이 예정되어 있어 지속적인 참여 필요성이 인정됨
- 검토 결과, 본 출연은 팔당 상수원 수질보전과 특별대책지역의 공동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다만, 매년 지속적으로 출연금이 지원되고 있는 만큼 주요 연구 및 협의 결과가 실질적인 규제 개선과 지역 현안 해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 추진성과와 출연금 집행현황 등에 대한 지속적인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5. 질의·답변요지 : 회의록 참고

6. 토론요지: 없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없 음

심 사 보 고 서

【남은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29

2026. 10. 8.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연월일 및 제출자: 2026. 8. 31. / 남양주시장
- 나. 회부일자: 2026. 10. 7.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2026. 10. 8.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민간위탁 추진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62조(권한이나 업무의 위임과 위탁)
-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6조(의회동의 및 보고) 및 제19조(재위탁·재계약)
- 「남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조례」 제17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 등의 설치·운영)

○ 민간위탁 필요성

- 남은음식물자원화시설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는 환경기초시설로서, 시설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해당 사무를 전문적 운영 역량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며
-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및 제19조(재위탁·재계약)에 따라 시의회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임

3.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 내용

- 남은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 반입·반출되는 폐기물의 계량 확인 및 관리
 - 시설 운영 및 유지보수 관리
 - 보유 장비 유지 및 관리
 -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관리
 - 기기의 정기적인 점검 및 검사, 분석
 - 시설 운영 시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 법령 준수
 - 기타 운영·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위탁자가 수행을 지시하는 사항

나. 위탁시설 개요

- 시 설 명 : 남은음식물자원화시설
- 소 재 지 : 남양주시 경강로 163번길 44(이패동)
- 처리용량 : 120톤/일
- 처리방법 : 기계적 처리(파쇄·선별·탈수)
- 운영인원 : 12명

다. 민간위탁 기간

- 2027. 1. 1. ~ 2030. 12. 31.(4년간)

라. 수탁기관 선정방식

- 공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마.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 총사업비 : 금6,511,766천원/년
- 산출근거 : 원가조사용역

-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예산 산정을 위하여 전문기관의 원가조사 용역을 실시

바. 적정성 검토 결과

구 분	검 토 의 견
다른 사무 방식으로 수행 가능성	○ 남은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을 위해서는 전문성과 현장 대응 역량 필요 ○ 직영 운영은 전문인력 확보 및 운영기술 축적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반면, 민간위탁은 기확보된 전문인력과 운영기술을 즉시 활용할 수 있어 시설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함

구 분	검 토 의 견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 음식물류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는 시민 생활환경과 직결되는 공공성이 높은 사무로서, 민간위탁을 통해 전문적인 운영 역량을 활용하여 시설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통해 공공성과 환경성을 확보하면서 안정적 서비스 제공이 가능함
경제적 효율성	○ 전문 인력과 운영 경험을 갖춘 민간업체를 활용하여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성과 기반 운영과 전문적인 유지·보수 및 인력 관리를 통해 비용 절감 등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음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오랜 기간 축적된 운영 노하우와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시설의 안정적·효율적 운영·관리가 가능함
성과측정의 용이성	○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1조(성과평가)에 따른 성과평가 대상으로 시설 가동률, 처리실적, 법정검사 이행 여부,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실적 등 객관적 지표를 활용한 운영성과의 평가·관리가 가능함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7조(지도·감독)에 따른 지도·점검, 성과평가 및 예산집행 점검 등을 실시함으로써 수탁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통한 투명성 확보가 가능함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 여건	○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분야에는 관련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업체가 다수 존재하여 공개경쟁을 통한 적정 수탁기관 선정으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함
종 합 의 견	○ 남은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관리 사무는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공공서비스로서, 전문성과 효율성이 함께 요구되는 분야임 ○ 민간의 전문 기술과 운영 경험을 활용하고, 시의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통한 공공성과 책임성 확보와 함께 시설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한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4. 검토보고요지(전문위원 조공선)

- 본 동의안은 남은음식물자원화시설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해당 사무를 2027년부터 4년간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고자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사항임
- 「폐기물관리법」 제62조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폐기물 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그 관리·운영을 맡을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남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조례」 제17조제1항에서도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민간 위탁에 대한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남은음식물자원화시설은 하루 120톤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는 환경기초시설로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설 가동과 전문적인 유지·관리가 요구되는 만큼, 관련 전문인력과 운영기술을 갖춘 민간업체를 활용하는 것은 시설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타당성이 인정됨. 다만 관련법률에 따라 공개모집 절차를 통하여 유지관리와 운영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기술력을 갖춘 전문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임.

5. 질의·답변요지 : 회의록 참고

6. 토론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없 음

심 사 보 고 서

【남양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30

2026. 10. 8.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연월일 및 제출자: 2026. 8. 31. / 남양주시장
- 나. 회부일자: 2026. 10. 7.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2026. 10. 8.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남양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기간이 2026. 12. 31.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 있는 기관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을 재위탁함으로써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및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 내용

- 「남양주시 정신건강증진 조례」 제6조에 따른 업무
 - 정신질환자 등록 관리 및 전문의료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업무
 - 정신질환의 예방, 상담, 조기발견, 치료 및 재활을 위한 활동과 각 활동 상호 간 연계사업
 - 정신건강에 관한 지역사회 조사 및 진단
 - 생애주기 및 성별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해소를 위한 인식개선, 정신질환자의 법적 권리보장 및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홍보
-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 자문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사업
-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 정신질환자 응급상황, 감염병, 재난 등 지역사회 위기관리 사업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나. 위탁시설 개요

위탁시설	인력	소재지	시설규모	개소연도
총 계	54명			
남양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29명	남양주시 경춘로 522 (남양주시 제2청사 별관 1층, 남양주보건소 5층)	363.6㎡ [별관 1층(327.2㎡), 보건소 5층(36.4㎡)]	1997년
(부설)자살예방센터	19명			2020년
(부설)청년마음건강센터	6명	남양주시 금곡로 26	188㎡	2022년

다. 민간위탁 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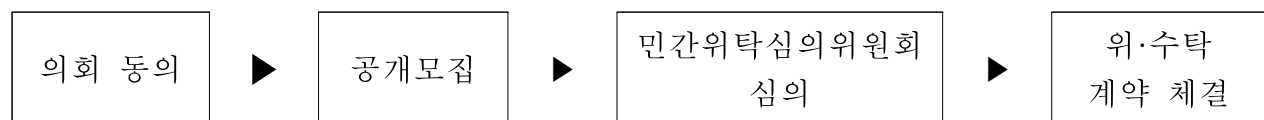
○ 위탁기간: 2027. 1. 1. ~ 2029. 12. 31.(3년)

※ 기존 위탁기간(2024. 1. 1.~ 2026. 12. 31.) 만료에 따른 재위탁

라. 수탁기관 선정방식

○ 선정방식: 공개모집

- (재위탁)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수탁기관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 수탁기관 자격요건

-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있고 정신건강 관련 전문인력 등을 갖춘 정신건강증진시설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마.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 운영예산: 3,266,552천원(2026년도 정신건강복지센터 예산 기준)

- 기관별 예산

(단위 : 천원)

기관명	합계	국비	도비	시비	비고
총계	3,266,552	1,168,426	290,213	1,807,913	
남양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2,428,865	890,163	188,647	1,350,055	사업비: 655,897 운영비: 304,700 인건비: 2,305,955
(부설)자살예방센터	637,687	178,263	86,566	372,858	
(부설)청년마음건강센터	200,000	100,000	15,000	85,000	

바.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구 분	검 토 의 건
다른사무방식 으로의 수행 가능성	○ 정신건강 상담, 사례관리, 자살예방 및 위기대응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로 정신건강 전문인력을 활용한 민간위탁 운영이 사업수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 지역주민에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공공성과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음
경제적 효율성	○ 전문기관의 운영 경험과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사업 운영의 효율성과 예산집행의 효과성 향상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 분야의 전문성과 풍부한 현장 경험을 활용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
성과측정의 용이성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 평가 및 사업 만족도 조사, 정부합동 평가지표관리 등을 통해 운영실적 평가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관계 법령 및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도·점검, 정산 보고 등을 실시하여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여건	○ 정신건강 분야 전문기관의 축적된 운영 경험과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정신건강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상담·사례관리·자살예방 등 전문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
종 합 의 건	○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은 높은 전문성과 지속성이 요구되는 사무로서 전문인력과 풍부한 운영 경험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의 질 향상과 사업의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사. 향후계획

- 2026. 9. ~ 10. : 위탁기관 모집 공고
- 2026. 10.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사
- 2026. 11. : 위탁계약 체결

4. 검토보고요지(전문위원 조공선)

- 본 안건은 남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 예정임에 따라 대상 사무를 민간에게 재위탁하고자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된 안건임
- 현재 위탁시설은 남양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및 부설 자살예방센터와 청년마음건강센터이며 동 센터운영과 관련하여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전문지식과 기술이 요구되는 사항임. 이에 따라 관련 규정에 의거,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며,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5. 질의·답변요지 : 회의록 참고

6. 토론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없 음

심 사 보 고 서

【남양주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31

2026. 10. 8.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연월일 및 제출자: 2026. 8. 31. / 남양주시장
- 나. 회부일자: 2026. 10. 7.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2026. 10. 8.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고혈압·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실천적 교육 및 상담을 통해 환자의 자가 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질병의 치료율과 조절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사업수행 능력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 내용

- 고혈압·당뇨병 환자 조기발견·등록관리 및 서비스 제공
-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참여의료기관 및 약국 연계·등록 지원
- 고혈압·당뇨병 등록자 관리 및 상담(자동응답안내, 직접전화, 진료안내문자)
- 지역주민 대상의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홍보(지역 캠페인)

- 심뇌혈관질환관리사업의 예방·관리·연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고혈압·당뇨병 등록자 교육 및 상담모형 개발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나. 위탁시설 개요

- 시 설 명 : 남양주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 인력현황 : 9명(센터장 1, 팀장 1, 행정 1, 운동처방사 1, 간호사 2, 영양사 3)
- 소 재 지 : 남양주시 경춘로 522 남양주시청 제2청사 4층
- 지원시설 : 교육실, 상담실, 사무공간

다. 민간위탁 기간

- 위탁기간 : 2027. 1. 1. ~ 2028. 12. 31.(2년)

라. 수탁기관 선정방식

- 모집방법 : 공개모집
- 자격요건
 - 심뇌혈관질환관리사업 전문인력이 풍부하고 공공보건사업에 참여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대학(교) 또는 의료법인이나 보건의료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보건의료관련기관 및 단체
- 선정방법 :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

마.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 소요예산 : 595,180천원(국비 50%, 시비 50%)
 - ※ 매 회계연도 질병관리청 확정내시 기준으로 예산액 변동
 - 인건비 380,750천원, 운영비 192,183천원, 여비 5,400천원, 보상금 8,847천원, 자산취득비 8,000천원

바.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구 분	검 토 의 견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남양주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는 「지역보건법」 제30조(권한의 위임 등),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위임 및 위탁)에 의거하여 사무를 위탁함으로써 전문성을 가지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만성질환의 성공적 예방관리와 주민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 관련 법령 및 조례, 질병관리청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지침 등에 근거하여 운영하므로 공공성 및 안정성 확보
경제적 효율성	○ 질병관리청에서 정한 표준 운영비로 전문인력을 구성·운영함으로써 예산 절감과 업무추진에 효율적임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전문인력 9명(센터장 1명, 팀장 1명, 행정 1명, 운동처방사 1명, 간호사 2명, 영양사 3명)으로 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전문지식 및 기술의 활용이 가능하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로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효과적임
성과 측정의 용이성	○ 질병관리청에서 제시한 성과지표를 바탕으로 사업계획 승인과 등록 환자 현황, 교육 현황, 월별실적 및 예산 사용 보고를 통한 정량·정성적 성과측정 용이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의회동의 및 보고)에 따라 수탁기관을 지도·감독, 성과평가함으로써 센터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여건	○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하여 중증 심뇌혈관질환 발생의 증가는 조기 사망의 주요 원인이므로 선행 질환인 고혈압·당뇨병의 예방 및 관리가 매우 중요한 시기임
총 합 의 견	○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은 중·장기적으로 지속되어야 하는 사업으로 전담 전문인력이 풍부하고 공공보건사업 참여 경험과 능력을 갖춘 기관의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고혈압·당뇨병 환자관리, 예방교육, 캠페인, 조기 발견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음 ○ 증가하는 만성질환 관리수요에 부응하고, 맞춤형 전문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효율적인 사무운영 및 행정비용의 절감을 도모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 운영으로 지속 추진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됨

사. 향후계획

- 2026. 9. ~ 10. : 위탁기관 모집 공고
- 2026. 10.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사
- 2026. 11. : 위탁계약 체결

4. 검토보고요지(전문위원 조공선)

- 본 안건은 남양주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의 위탁 운영 만료 (2026.12.31.)에 따라 공개모집으로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고혈압·당뇨병 지속치료 향상 및 사전적 예방관리 강화를 추진하고자 제출된 안건임.
- 해당 사무는 2010년도부터 민간위탁하여 수행해 온 사무이며 특수한 전문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사무로 「심뇌혈관질환법」 제20조에 따라 심뇌혈관질환 관계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임.

5. 질의·답변요지 : 회의록 참고

6. 토론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없 음

심 사 보 고 서

【2027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안】

의안번호
32

2026. 10. 8.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연월일 및 제출자: 2026. 8. 31. / 남양주시장
- 나. 회부일자: 2026. 10. 7.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2026. 10. 8.

2. 제안설명 요지

- 가. 제안이유
 - 관내 농어업(법)인에게 경영 및 시설자금 저리 융자지원 사업을 위해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적립금을 출연

3. 주요내용

- 2027년 출연금 : 50백만원
- 사업명 : 2027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지원사업(농업발전계정)
- 사업내역
 - 현재까지 남양주시 출연금액 : 2,316백만원(1989~2026)
 - 경기도 기금 규모 : 매년 1,150백만원 적립
 - 경기도 200백만원 / 도농복합시(16개) 50백만원 / 일반시(15개) 10백만원
 - 지원대상 : 농어업(법)인

- 지원내용 : 연 1% 융자 지원

○ 융자지원 사업 실적

(단위: 백만원)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융자금액(명)	130(2명)	90(2명)	360(2명)	210(2명)

○ 농어업경영자금

- 사업대상 : 도내 주소지를 두고 남양주시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해당 분야(원예, 과수, 축산업 등)에 종사하는 농어업 경영체
- 지원조건 : 연리 1%, 2년 만기 원리금 일시 상환
- 지원한도 : 개인 6천만원, 농업법인 2억원 이내
- 자금용도 : 일반농업, 축산업, 수산업에 소요되는 경영비

○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

- 사업대상 : 남양주시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해당 분야(원예, 과수, 축산업 등)에 종사하는 농어업경영체, 청년창업농 및 후계농업경영인 등
- 지원조건 : 연리 1%,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
(청년 : 5년 거치 10년 균분 상환)
- 지원한도 : 개인 3억원, 법인 5억원 이내
- 자금사업 : 농지 구입, 시설현대화 등 영농기반 조성 자금

4. 검토보고요지(전문위원 조공선)

- 본 출연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과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따라 경기도에 5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출연 목적과 농업인에게 생산유통 가공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과 농축수산업에 소요되는 경영자금을 각각 연 1%의

저리로 융자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최근 4년간 우리 시의 융자지원 실적은 8명에 7억 9000만 원입니다.

- 검토결과, 농업인에게 시설 및 경영자금을 저리 융자 지원함으로써 자립 영농 촉진 및 경영안정에 도움을 주고 있기에 기금 출연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 질의·답변요지 : 회의록 참고

6. 토론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없 음